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위원회의 권한·구성 개편 및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0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개관	3
2. 조문별 검토	7
가.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제12조, 제25조, 제56조 등)	7
나. 전기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안 제53조, 제54조, 제58조 및 제60조)	16
다. 전기요금 등의 결정 절차(안 제15조 및 제16조)	21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안 제6장의2, 제18조, 제22조 등)	24
마. 설비계획의 인가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안 제27조 및 제45조의2)	38
바. 과징금과 기금 및 벌칙(안 제12조제5항, 제24조, 제49조, 제50조 등)	4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개관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전기사업 규제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그 위원을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 감시할 기관으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도록 함.

개정안이 개정하려는 조문은 34개에 이르는바, 그 주요 내용은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지위·구성’ 관련 사항과 ‘전기요금 결정 절차 개편’ 사항,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관련 사항으로 관련 내용 및 조문 등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 분	주 요 내 용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 전기사업 허가, 약관 인가, 운영규칙 승인 등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격상(안 제7조, 제12조 등)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안 제56조제1항)
전기위원회의 지위·구성	·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추가하고 소속에 관한 문구를 삭제(안 제53조제1항) · 위원을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며, 위원을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안 제53조제2항·제3항) · 회의의 소집과 정족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규정(안 제58조)

구 분	주 요 내 용
전기요금 결정 절차 개편	·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안 제16조제3항) · 인가가 있으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4항)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감시·조사 등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 (안 제6장의2)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출연·보조와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 (안 제60조의9, 제60조의10)
그 밖의 제도 개편	· 송·변전설비계획과 배전설비계획을 인가 대상으로 신설(안 제27조) ·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의2) ·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안 제12조제5항)

최근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날의 경직성 전원¹⁾ 비중은 2021년 5월 62.3%에서 2025년 5월 81.1%로 상승하였고, 수급관리를 위한 비상대응기간은 연중 281일에 이르며,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총 113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거래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심의기구로서, 장관의

1) 경직성 전원이란 원자력발전과 같이 출력을 신속하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발전설비를 말하며, 태양광·풍력과 같이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정하여지는 설비도 이에 준하여 다루어짐. 그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우려가 커짐.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 및 이행방안」(전력감독원 설립준비 T/F, 2025. 11. 17.). 이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감독원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임.

처분에 앞서 심의를 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재정(裁定)³⁾하는 데 그치며, 상시 근무하는 위원도 1명뿐인 데다 그 자리마저 전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임.⁴⁾

한편 전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개편하려는 법률안 6건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기위원회 관련 법률안 비교]

구 분	규제기관의 지위·소속	전기위원회의 권한	그 밖의 사항
현 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인가·허가는 장관	심의 및 재정(裁定)	-
김정호의원안 (2207823)	국무총리 소속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 전기위원회 폐지	위원회가 인가·허가를 직접 행사	전기·가스·열 통합 규제
허성무의원안 (221057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지	심의 → 심의·의결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박지혜의원안 (2211677)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심의 → 심의·의결	위원 자격 요건 강화
김소희의원안 (2214234)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전기위원회 존치	현행 유지	전기요금 인가 권한만 분리
곽상언의원안 (2215373)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심의 → 심의·의결	위원 9명 중 4명 국회 추천, 사무처 신설
서왕진의원안 (221641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지	심의 → 심의·의결	요금 결정에 기속력 부여,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이종배의원안 (2219605)	소속에 관한 문구 삭제	심의 → 심의·의결	위원 전원 국회·교섭단체 추천,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설비계획 인가제 신설

3) 재정(裁定)이란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등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함. 재정이 있는 후 6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재정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4) 전기위원회의 구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하고 있음. 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1명이며, 그 상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임(제62조 및 제63조).

위 법률안 중 5건은 2025년 11월 20일과 2026년 2월 4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임.

당시 요금 결정 기능을 부처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음.⁵⁾

전력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을 상시 감시할 기구를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기위원회의 소속과 의결의 효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되는 법인의 업무 범위와 재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포함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5)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5. 11. 20.)

2. 조문별 검토

가.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제12조, 제25조, 제56조 등)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사업허가의 취소,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전력거래가격 상한의 고시, 전력시장운영 규칙의 승인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면서, 그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모두 “심의·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5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② ----- ----- ----- ----- ----- <u>심의·의결을</u>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생략)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u>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음) ② ----- ----- ----- ----- -----<u>심의·의결을</u>-----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u>심의·의결(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u>----- ----- ----- -----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u>5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 (생략) ⑥ ⑦ (생략)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 ----- ----- ----- -----5 <u>억원</u>----- -----. 1. 2. (현행과 같음) ⑥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 ----- ----- -----<u>심의·의결을</u>----- ----- ----- -----. ----- ----- -----<u>심의·의결을</u>-----.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 ----- ----- <u>--심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u> -----. ----- ----- ----- -----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 ----- ----- ----- -----.

현행	개정안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 ----- <u>심의</u> · <u>의결을</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생략)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생략할 수 있다.	④ ----- ----- ----- <u>심의</u> · <u>의결을</u> -----. ----- ----- <u>심의</u> · <u>의결을</u> -----.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생략)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② (생략)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③ ----- ----- ----- <u>심의</u> · <u>의결을</u> ----- -----.

현행	개정안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u>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u> 7. (생략)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u>소규모전력자원 모집 · 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u> 4. <u>소규모전력자원 모집 · 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u> 5. (생략)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고</u>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 10. (생략)	④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심의 · 의결을</u>----- -----.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5. (현행과 같음)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 -----<u>심의 · 의결하고</u>----- -----.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10의2. 제25조에 따른 기본계획
<u><신 설></u>	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u><신 설></u>	10의3. 제27조에 따른 송전·변
	전설비계획,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의2. 제41조에 따른 정보 공
<u><신 설></u>	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u><신 설></u>	13의3. 제45조제4항에 따른 송
	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의 범위에 관한 사항
<u><신 설></u>	13의4.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
	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
	독에 관한 사항
<u><신 설></u>	13의5. 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
	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	14. -----
의 <u>심의사항</u> 으로 규정한 사항	-- <u>심의·의결사항</u> -----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u>심</u>	15. ----- <u>심</u>
<u>의를</u> 요청한 사항	<u>의·의결을</u> -----
② <u>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u>	② <u>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u>
<u>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u>	<u>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u>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u>	<u>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u>
<u>건의를 할 수 있다.</u>	<u>는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u>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u>③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건의할 수 있다.</u> 제59조(전문위원회) ① ----- -----<u>심의·의결사항 및 재정</u> <u>관한 사전검토 등</u>----- ----- -----. ② (현행과 같음)

심의는 의견을 형성하는 절차인 반면 의결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론을 확정하는 절차인바⁶⁾,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판단이 장관의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심의”를 “심의·의결”로 변경하였을 뿐 장관이 그 의결의 내용대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조문에 반영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심의는 안전을 검토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절차이고, 의결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론을 확정하는 절차임. 다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처분권자가 그 결론에 구속되는지는 조문의 문언에 따라 달라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⁷⁾

7)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 사무국) 제출 검토의견(2026년 8월). 이하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은 모두 같은 자료에 따른 것임.

나. 전기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안 제53조, 제54조, 제58조 및 제60조)

현행법은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고, 9명 이내의 위원을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기위원회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면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나머지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추천권을 국회로 이전함.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등을 추가하고, 회의의 소집 요건과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조성,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u> ----- ----- - <u>심의·의결과</u> ----- ----- ----- <u>전기위원회를</u>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② ----- <u>위원장 1명을</u>

현행	개정안
<u>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하되, <u>위원 중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u> <u>로 한다.</u> ③ <u>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u> <u>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u> <u>장관의 제청으로</u> 대통령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u>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u> <u>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u> <u>무기구를 둔다.</u> <신 설>	<u>포함한 12명</u>----- -----<u>위원장 및 위원 2명</u> <u>은 상임으로 한다.</u> ③ ----- -----<u>다음 각 호의 구분</u> <u>에 따라</u> <u>국회가 추천하는 사람</u> <u>을</u>----- --. 1. <u>위원장: 국회의장이 각 교섭</u> <u>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u> <u>천하는 1명</u> 2. <u>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u> <u>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u> <u>단체가 추천하는 1명과 그 외</u> <u>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u> 3. <u>제1호 및 제2호 외의 위원:</u> <u>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u> <u>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u> <u>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u> <u>추천하는 사람</u> <삭 제> ⑤ <u>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u> <u>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u>

현행	개정안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 5.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한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 ----- ----- ----- 1. 2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2. -----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설></u>	제5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60조(조직 및 운영) <u><신설></u> (생략)	<u>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④ 전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제60조(조직 및 운영) <u>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u> <u>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개정안은 위원의 추천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소속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도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등 다른 기관에 두는 규정은 두지 않았는바, 개정 후에는 전기위원회가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가 법률에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전기요금 등의 결정 절차(안 제15조 및 제16조)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며⁸⁾, 이때 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⁹⁾

개정안은 이 협의를 대신하여,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심의·의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관이 인가를 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아울러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인가 대상에 망 접속·연계 기준을 명시하고, 인가 시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u>그 밖의</u>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 ----- ----- ----- <u>송전·배전망 접속 또는 연계 기준 등 그 밖의</u> -----

8) 기본공급약관이란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용하는 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으로서, 사실상 전기요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하는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이에 해당함.

현행	개정안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u>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 -----. -----. ② ----- ----- -----<u>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u>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u>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u>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u>-----. ③ <u>전기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u>

현행	개정안
<신설> ③ ~ ⑤ (생략)	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전기요금은 원가 외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 적기에 조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바, 개정안은 요금 결정 절차를 간명하게 하여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다만 협의는 관계 부처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인 반면 의견 청취는 일방이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금 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약화되므로, 관계 부처의 관여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재정경제부도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협의 절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 부분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안 제6장의2, 제18조, 제22조 등)

개정안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 감시할 기관으로 한국전력 감독원을 신설하도록 함.¹⁰⁾

전력감독원은 전력거래와 계통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조사하고,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참여하며, 전력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전기사업자는 전기품질의 측정 결과를 전력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출연·보조와 한국전력 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원장과 주요 임원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전력계통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u>

10)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하고, 전기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15. ~ 21. (생략) 제18조(<u>전기품질의 유지</u>) ① (생략) ② <u>전기사업자</u>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u>경</u>	<u>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인 상태 또는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 및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상태</u>를 말한다. 15. ~ 21. (현행과 같음) 제18조(<u>전기품질 등의 유지</u>)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사업자등</u>----- ----- ----- -----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 ----- -----경

현행	개정안
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우 혹은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심의·의결을</u>----- ----- -----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생략) <u><신설></u>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7조의2(<u>전력계통의 신뢰도</u> 유	----- ----- ----<u>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u>으로----- ----- -----. ② ----- ----- ----- ----- ----- -----<u>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u>으로-----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u>전력계통 신뢰도의</u> 유

현행	개정안
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	지) ① ----- --<u>전력계통 신뢰도의</u>----- ----- -----. ② -----<u>전기사업자</u>----- <u>업자등은</u>----- -----<u>전력계통</u>----- -----. ③ ----- ----- <u>전력계통</u>----- ----- ----- -----<u>매년 실시하고</u>----- -----. ④ ----- ----- ----- -----<u>전기사업자등에게</u>----- -----. ----- -----. ⑤ -----<u>전력계통</u>-----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u>전기사업자</u>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 -----<u>심의·의결을</u>----- -----<u>전기사업자등</u>----- -----. <u>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u> <u>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책무 이행 및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 개발 및 감시·조사 등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u> <u>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한다.</u> <u>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u> <u>②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임원의 성명과 주소</u> <u>5. 공고의 방법</u> <u>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u> <u>5. 임원에 관한 사항</u> <u>6. 이사회에 관한 사항</u> <u>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u> <u>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u> <u>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 <u>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u> <u>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u> <u>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u> <u>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u> <u>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u> <u>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u> <u>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u> <u>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원</u>

현행	개정안
<신설>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 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 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 한 사항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2.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 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 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에 따른 조사, 평가 등 업무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60조의7(겸직의 제한) 전력감독 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u> <u>제60조의8(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u> <u>1. 제60조의9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u> <u>2. 제60조의10에 따른 분담금</u> <u>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60조의9(출연금 또는 보조금)</u> <u>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0조의10(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를 통하여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u><신 설></u>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u> <u>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u><신 설></u>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u> 1. <u>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u> 2. <u>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u>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략) <신설>	<u>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u> 3. <u>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u> ④·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전력감독원의 임직원</u>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시장 참여자의 다양화로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를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을 상설로 두려는 취지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감독원의 설립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6장의2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는바,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그 근거 법률을 별표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별표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분담금이 같은 법의 부담금에 해당하는지와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¹⁾

11)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분담금·부과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으로 정의하고(제2조), 그 근거 법률이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조). 「전기사업법」과 관련하여서는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만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

마. 설비계획의 인가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안 제27조 및 제45조의2)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²⁾

배전망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배전사업자로부터 하여금 증설·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이 그 계획의 변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송전사업자의 송전·변전설비계획과 배전사업자의 배전설비계획을 인가 대상으로 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력감독원이 그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또한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내리는 계통운영 지시의 적절성도 평가·조사하도록 함.

12) 현행법 제26조는 전기사업자가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전기설비의 시설계획과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는 한국전력공사 등 배전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실태를 조사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그 계획의 변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생략) <u><신설></u>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송전사업자는 송전·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u> <u>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u> <u>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u> <u>야 한다.</u>
<u><신설></u>	③ <u>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 설비계획을 수립</u> <u>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u> <u>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신설></u>	④ <u>전력감독원은 송전사업자와</u> <u>배전사업자의 설비계획의 이행</u> <u>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전기위</u> <u>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u>수요관리사업자</u> 에게 전력계 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 사업자 및 <u>수요관리사업자</u> 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 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 <u>수요관리사업자 등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자</u> ----- ----- ----- ----- -----

현행	개정안
	<u>할 수 있다.</u> <u>1.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u> <u>관련 자료의 제출</u> <u>2.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u> <u>3. 기타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u> <u>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에너지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전력을 송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바, 개정안은 설비계획을 인가 대상으로 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고 계통운영에 대한 감독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동일·유사한 계획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시설계획의 신고(제26조)¹⁴⁾’와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의

제출(분산에너지법 제18조¹⁵⁾)’ 및 ‘개정안에 의한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등의 송전·변전·배전설비 계획의 인가¹⁶⁾’라는 세 가지 절차가 중복되므로, 어느 절차를 존치하고 어느 절차를 정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변전설비의 건설 지연은 주민 반대 등 민원이 주된 원인이므로 그 이행 평가를 전력감독원의 업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전기사업법」 제26조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시설계획과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실태를 조사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그 계획의 변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6) 안 제27조제2항은 송전사업자가 송전·변전설비계획을, 같은 조 제3항은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배전설비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바. 과징금과 기금 및 벌칙(안 제12조제5항, 제24조, 제49조, 제50조 등)

개정안은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지행위에 대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같은 기금을 전력감독원의 설립과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력감독원 임직원의 비밀누설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하고, 다른 조문을 인용한 부분의 조항 번호를 정비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u>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u>심의</u> <u>· 의결</u>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 ----- ----- ----- -----.

현행	개정안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발령하여 <u>5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 ----- ----- ----- ----- ----- -----5 <u>억원</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u>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 ----- ----- <u>심의·의결(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u> 을----- ----- ----- ----- -----.

현행	개정안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신설></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48조에 따른 기금으로 출연한다.</u>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0의2. (생략) <u><신설></u> 11.·12. (생략)	제49조(기금의 사용) -----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u>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u> 11.·12.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u><신설></u> <u>1. ~ 4. (생략)</u> ②·③ (생략)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 ----- -. <u>1. 제24조에 따른 과징금</u> <u>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2조(벌칙) ① ----- -----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 ----- -----.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 기를 공급한 자	1. 제16조제7항을----- -----
1의2. ~ 7. (생략)	1의2. ~ 7.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u>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 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	2. 제16조제6항을----- ----- -----

현행	개정안
한자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력감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설립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⁷⁾, 그 시점에는 이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므로 설립준비 규정에 별도의 시행일을 두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징금의 상한이 열 배로 상향되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정하고 있지 않은바¹⁸⁾,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7)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두어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며,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18)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허가 등 행정처분을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7